발 간 등 록 번 호

전북교육 2023-156

학생충심 미래교육



2023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방향



전북교육 기본방향

전북교육 기본방향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 목표 및 방향

목표 자신을 가꾸어 미래를 주도하는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 □ 학생 건강증진교육 활성화
 - 체계적인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 건강증진 중점학교 운영

교육이 실천으로

- □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건강한 체중 유지·관리 활성화
 - 학생 시력 보호 및 구강·아토피질환 예방
 -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실천이 습관으로

- □ 학생 건강검사 및 보건실 운영 활성화
 - 학생 건강검사 및 추후관리 철저
 - 학교 응급환자 및 건강요주의자(소아당뇨 등) 관리
 - 안정적인 학교 보건실 운영

더불어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점추진과제

목 차

│. 학생 건강증진교육 활성화
1. 체계적인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 학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1
3. 건강증진 중점학교 운영13
Ⅱ.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15
1.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17
2. 건강한 체중 유지·관리 활성화 ···································
3. 학생 시력 보호 및 구강아토피질환 예방26
4.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 28
Ⅲ. 학생 건강검사 및 보건실 운영 활성화 ⋯⋯ 33
1. 학생 건강검사 및 추후관리 철저35
2. 학교 응급환자 및 건강요주의자(소아당뇨 등) 관리38
3. 안정적인 학교 보건실 운영43

· V. 제출 목록 및 서식 ······· 47
1. 제출 목록49
2. 제출 서식50
∨. 참고자료 ······· 69
1. 학생건강증진 관련 법령·고시·지침71
2. 학생건강증진교육 관련 참고자료 사이트72
3.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74
4.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75
5. 보건실 현대화 환경 점검표77
6. 흡연·음주 실태조사 설문지(예시) ······79
7. 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 안내(예시)84
8.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87
9.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기록지89
10. 건강요주의 학생 명단(예시)90

│. 학생 건강증진교육 활성화

- 1. 체계적인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2. 학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 3. 건강증진 중점학교 운영

1 체계적인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내실있는 보건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 지원

□ 기본방침

- 교육(지원)청 정책과 연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O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연수, 수업컨설팅 및 자율장학 활성화 지원
- O 학생 참여 활동중심의 보건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근 거

- O「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O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734(2022.12.12), '2023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안 안내'
- 2023.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2, 2023.1.3.)

□ 현황

O 보건교육 실시 현황(2022. 12.기준 전북 현황)

711	학교	전체		실시 학교수		미실시
구분	급별	학교수	16차시 이상	16차시 미만	계	학교수
	초	422	387(91.7%)	35(8.3%)	422(100%)	0
전체	중	211	165(78.2%)	46(21.8%)	211(100%)	0
학교	고	133	108(81.2%)	25(18.8%)	133(100%)	0
	특수	9	7(78%)	2(22%)	9(100%)	0
	초	299	292(98%)	7(2%)	299(100%)	0
보건 교사	중	142	130(92%)	12(8%)	142(100%)	0
╨^r 배치교	고	120	101(84%)	19(16%)	120(100%)	0
711/1/11/	특수	9	7(78%)	2(22%)	9(100%)	0

○ 중·고등 보건교과 선택 현황(2022. 12.기준 전북 현황)

원그구버 조원교			हो. नो				
학교급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소계	합계
총 학교수	211	96	28	1	8	133	344
선택 학교수	109 (51.6%)	29 (30.2%)	6 (21.4%)	0	2 (25%)	37 (27.8%)	146 (42.6%)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이외의 선택과목을 운영한 학교수

□ 추진방향

■ 체계적인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교육(지원)청

○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성장기의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단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컨설팅 장학 강화

- 학교보건교육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장학 계획 안내
- 컨설팅 장학 및 수업 컨설팅 시 보건수업 컨설팅 장학 포함 실시
- 학교보건교육 컨설팅 지원단 조직·운영

각급 학교

○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

- (단위학교)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모든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교과(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
 - * 1시간 기준: 초(40분), 중(45분), 고(50분)
 - ※ 학교보건교육 실시 결과(시수, 담당교사 등)를 나이스 교무업무관리시스템 (시간표 관리)에 등록·관리
 - ※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순회지원 기간제 보건교사를 적극 활용

■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교육(지원)청

- 연수 지원 및 자료 공유·일반화
 -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보건교육 자율장학 활성화 연수 지원
 - 보건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추진을 통한 교수 학습 방법 및 자료 공유와 일반화

각급 학교

- 수업 중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보건 수업 시 보건실 환자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대행 교사 지정
 - 보건교육실은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히 접근·대처
- 교육자료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 확보
 - 보건교육 교재 및 교구 확보, 필요시 보건 보조 인력 활용 등 조치 마련

□ 행정사항

- O 보건교육 추진 현황(계획 및 실적) 보고 【서식 1】
 - 기한
 - (계획) 학교(2023. 3. 31.까지) → 교육지원청(2023. 4. 7.까지) → 도교육청 (실적) 학교(2023. 11. 24.까지) → 교육지원청(2023. 12. 8.까지) → 도교육청
- O 보건교사 맞춤형 연수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보건교사
 - 주요내용: 소아당뇨 학생 지원 및 학교 내 응급처치 등
 - 추진일정: 2023년 8월, 12월
 - ※ 자세한 사항은 향후 별도 안내

O 신규 보건교사 연수

- 대상: 2023년 신규 보건교사
- ※ 교육내용 및 추진 일정은 연수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전라북도교육연수원 주관 운영)
- O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분야 유공자 표창 실시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표창 추천 안내: 2023년 12월(예정)
- O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관련 자체평가 실시
 - 매 학기 말 자체평가 후 학교장 내부 결재 및 향후 계획에 보완 반영

□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관련 자체평가서(예시)

• 평가 실시일: 7월 기준, 12월 기준

1. 기본현황

학 교 명			담당자	직위:	성명:	
학 급 수			학생수		명 (남: , 여:)
건강요주의학생	병수 명	응급	환자 발생건수*	4	선 보건실 이용자수	명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p.42 참조)

2. 영역별 자체평가 항목 및 배점

영역	평가 지표	평가내용	배점	자체 평점			
\$1.01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립, 실행 및 평가하는가?	10	·			
학생 건강 증진 사업	학생건강검사	 학생건강검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유소견자 추 후 관리를 시행하는가? 	10				
	질병예방관리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가?	10				
	응급환자관리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한 업무지침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하는가?	5				
보건 의료	일반 건강 및 의료상담	학생들에게 건강관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는가?	5				
서비스	건강요주의자 학생 관리	통상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요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하고 그들에게 면담, 교직원 연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5				
	보건교육 계획	•보건교육 내용과 특성에 맞는 수업 계획과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교과 내용 및 수업 연구를 하는가?	5				
보건 교육	보건교육 운영	·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한 보건교육을 충실히 하는가?	10				
,	보건교육 평가	보건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는가?	5				
교직원 연수	집단 연수	 학교응급의료관리체계 안내(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감염병 관리, 건강요주의학생 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연수 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가? 고 외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연수를 운영 하는가? 	5				
	개인자율연수	。보건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연구 및 연수 활동은 활발한가?	5				
보건실	보건실 시설 및 기구 확보	적정규모 보건실 설치 및 시설・기구가 확보되어 있으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5				
운영	의약품 관리	· 의약품은 적절하게 구입, 사용하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되고 있는가?	5				
예산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 예산의 편성,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기타	특색 사업	·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개조식으로 내용 기록. 별도 첨부)	10				
	총 점 100						
	■ 개선	· 보완 · 건의 사항(개조식으로 기록, 별도 첨부)					

3. 영역별 평가 기준 및 척도

영역	평가내용	배점	기준 및 척도(범위)
		10-8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수행(+),
	1.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기본	10-0	평가(+)
	계획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립, 실행 및 평가하는가?	7-4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수행(+), 평가(-)
	(10점)	3-1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수행(-), 평가(-)
학생 건강	2. 학생건강검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8	법령에 따른 시기·방법·절차 준수(+), 기록관리우수(+), 추후 가정통신 및 상담관리(+)
증진 사업	반영한 학교보건교육과정 운 영 계획 수립 및 유소견자 추후 관리를 시행하는가? (10점)	7-1	법령에 따른 시기·방법·절차 준수(+), 기록관리우수(+), 추후 가정통신 여부 및 상담관리(-)
	3.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 하는가? (10점)	10-1	홈페이지 보건 영역 운영, 보건소식지(가정통신문) 발간, 보건 관련 특별활동 우수 등 건당 1점, 최고 10점
	4.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한 업무지침을 적절하게	5	응급환자 관리 종합대책 수립(+), 결재(+), 교직원연수(+)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하는가?	4-3	응급환자 관리 종합대책 수립(+), 결재(+), 교직원연수(-)
		2-1	응급환자 관리 종합대책 수립(+), 결재(-), 교직원연수(-)
	5. 학생들에게 건강관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5	학생건강관리 상담 목표수립(+), 수행+),상담일지 기록관리(+)
보건 의료 서비스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는가?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적절한	4-3	학생건강관리 상담 목표수립(+), 수행(+),상담일지 기록관리(-)
MM=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가?	2-1	학생건강관리 상담 목표수립(+), 수행(-),상담일지 기록관리(-)
	6. 통상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요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5	전학년에 대한 가정통신문(+), 건강요주의자 면담(+), 결재(+), 교직원 연수 실시(+)
	학년 초에 파악하고 그들에게 면담, 교직원 연수 등 적절한	4-3	전학년에 대한 가정통신문(+), 건강요주의자 면담(+), 결재(+), 교직원 연수 실시(-)
	조치를 취하는가? (5점)	2-1	담임자료에 의한 건강요주의자 파악(-)
	7. 보건교육 내용과 특성에 맞	5	보건교육 기본계획수립(+), 결재(+), 교육과정에 편성(+)
	는 수업 계획과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교과 내용 및 수업	4-3	보건교육 기본계획수립(+), 결재(+), 교육과정에 편성(-)
보건	그에 따는 교과 대흥 및 구입 연구를 하는가? (5점)	2-1	보건교육 기본계획수립(+), 결재(-), 교육과정에 편성(-)
교육	8.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한	10-8	학습지도안(+), 계획에 입각한 보건교육 자료 확보(+)
	보건교육을 충실히 하는가?	7-4	학습지도안(+), 계획에 입각한 보건교육 자료 확보(-)
	(10점)	3-1	학습지도안(-), 보건교육 자료 확보(-)

영역	평가내용	배점	기준 및 척도(범위)
보건	9. 보건교육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그	5-3	평가계획(+), 수행평가(+), 종합평가(-)
교육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는가? (5점)	2-1	평가계획(+), 수행평가(-), 종합평가(-)
	10. 학교응급의료관리체계 안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감염병 관리, 건강요주의학생	5	학교응급의료관리체계안내(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감염병 관리, 건강요주의학생 관리, 심폐소생술 등 계획 수립(+), 결재(+), 교직원 연수(+)
교직원	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연수 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4-3	학교응급의료관리체계안내(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감염병 관리, 건강요주의학생 관리, 심폐소생술 등 계획 수립(+), 결재(+), 교직원 연수(-)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가? (5점)	2-1	학교응급의료관리체계안내(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감염병 관리, 건강요주의학생 관리, 심폐소생술 등 계획 수립(+), 결재(-), 교직원 연수(-)
	11. 보건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연수 활동은 활발한가? (5점)	5-1	연수(교육) 및 보건교육연구회 활동 참가 건당 1점. 최고 5점
	12. 적정규모 보건실 설치 및	5	보건실 적정 규모(+), 기준대로 보건실 시설기구 확보(+)
	시설·기구가 확보되어 있으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4-3	보건실 적정 규모(+), 기준대로 보건실 시설기구 확보(-)
보건실	(5점)	2-1	보건실 적정 규모(-), 기준대로 보건실 시설-기구 확보(-)
운영	13. 의약품은 적절하게 구입,	5	정기적 약품 구입(+), 약품보관장 시건장치(+), 유효 기간 지난 약품 폐기(+)
	사용하며 안전한 장소에	4-3	정기적 약품 구입(+), 약품보관장 시건장치(+), 유효 기간 지난 약품 폐기(-)
	보관되고 있는가? (5점)	2-1	정기적 약품 구입(+), 약품보관장 시건장치(-), 유효 기간 지난 약품 폐기(-)
	14.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	5	학생건강검사와 별도검사, 보건교육자료 구입, 기구·시 설·설비 등 적정 보건예산 확보(+), 계획대로 집행(+)
예산 관리	예산의 편성, 집행이 적정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3	예산 확보(+), 계획대로 집행(-)
	(5점)	2-1	예산 편성 현저하게 부족
		10-8	학교중심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2개 이상 실시
기타	15.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가? (10점)	7-4	학교중심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1개 이상 실시
		3-1	학교중심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준비 작업 중
	총 점	100	

※위의 기준 및 척도를 참고하여 단위학교에서 평가한 후 학교보건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반영

□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시 주요 반영 사항

	 교육(지원)청 보건교육 편성지침 교육(지원)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지침 중 보건교육은 어떻게 구성하고
고육 (지원)청	있는가? -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과 '컨설팅자료'를 작성하여 학교 보건교육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관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컨설팅 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료 등 참고
2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행·재정적인 지원 현황 교과서 보급, 보건교육실 설치 등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현황은?
학교 3	 ○ 학교 보건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 학교교육과정에 연간 보건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 계획내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해 교과서를 보급·활용하고 있는가? - 누가 보건교육을 담당하나? - 학교보건교육 실시현황(시수, 담당교사 등)이 정확하게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있는가? - 보건교사 수업 중 적정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학교회계 운영비에 보건교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는가? (보건교육 주요 참고사항) - (주요내용) 건강의 이해, 질병예방과 관리,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정신건강,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등 - (교육시수) 중등학교 선택과목 채택·운영, 선택과목으로 운영하지 않는

2 학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체계적인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수행 능력 향상 및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기본방침

- O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 O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교육을 통한 응급상황 시 조기 대처능력 증대

□ 현황 및 근거

- O「학교보건법」제9조의2(보건교육 등)
- O 2023.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방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2, 2023.1.3.)

□ 추진방향

■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의무 실시

교육[지원]청

O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 지도·점검 및 운영 관련 컨설팅 지원

각급 학교

- 모든 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 (계획 수립 및 보고) 학년 단위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2023. 3. 31일까지 수립, 교육 결과를 내부 결재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
 - (교육시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년별 2시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교육부 고시 제2021-21호)
 - ※ 심폐소생술 교육은 **반드시 최소 2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 대상**으로 <u>실습</u>을 포함하여 실시

- (교육평가) 심폐소생술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수행평가 권장(연 1회)
-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시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을 참고하여 시행
- O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관심 및 심폐소생술 시행률 제고

□ 행정사항

- O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결과 보고 【서식 5】
 - 기한: 학교(2023. 12. 6.까지) → 교육지원청(2023. 12. 12.까지) → 도교육청
- O 각 학교별로 자동심장충격기 1대 이상 설치
 - ※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내용연수는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 점검·관리 철저 및 자체 구입예산을 확보하여 교체
 -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지침」 (인성건강과-18374, 2022.10.26.)

3 건강증진 중점학교 운영

- O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보건교육 활성화
- O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 지도 관리로 학생건강증진 도모
- O 활동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용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 기본방침

- O 활동중심 체험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습관 내면화
- O 지역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거점학교 역할 부여로 우수사례 공유 및 일반화
-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건강실태 파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자문 운영
- O 중점학교 운영담당자 및 추진팀 구축으로 구성원 참여형 중점학교 운영

□ 근 거

-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 「학교보건법」제16조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설립 등)

□ 세부 추진계획

- 운영학교: 3개교(3개 분야 각 1교씩: 구강 및 시력건강, 건강체중, 체형균형)
- O 운영기간: 2023. 3. ~ 2023. 12.
- O 지원예산: 총 30.000천원(교당 10.000천원)
- O 주요 사업
 - 학생 활동 중심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또래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실천 활동 실시
 - 학부모와 연계한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건강증진을 위한 학급 및 학교 환경 조성

□ 행정사항

- 건강증진 중점학교 운영 결과 보고 및 평가: 2023. 12월
- O 건강증진 중점학교 운영 사례 및 자료 공유(향후 별도 안내)

Ⅱ.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 1.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2. 건강한 체중 유지관리 활성화
- 3. 학생 시력 보호 및 구강·아토피질환 예방
- 4.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1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체계적 감염병 예방 · 관리로 학교 내 감염 확산 방지 및 학생들의 건강 보호

□ 기본방침

-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추진으로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관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 대응 활동 지속적 지원
- O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근 거

- 「학교보건법」제8조(등교중지),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제14조(질병의 예방),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제14조의3(감염병 예방대책의 마련 등)
- O「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제22조의2(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 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 2023.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2, 2023.1.3.)

□ 현 황

- O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신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 '학생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수립,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개정, '학생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추가 개발 등(교육부, 교육청)
- O 학생 감염병 관리체계 정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 O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및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 모의훈련 실시

□ 추진방향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대응 태세 확립

교육(지원)청

-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
 - 교육(지원)청 단위의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자체 대응체계 구축 운영
- 감염병 대비 대응 체계 마련 및 지원
 -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비상 연락망 구축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 차단 대책 수립·추진
 -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보급, 방역활동자원봉자사 운영비 및 물품비 지원

각급 학교

-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조직 운영
 - 학교 단위의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부서 가 협력을 통한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정보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 차단 대책 수립·추진
 -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학교 구성원 공유 및 숙지

■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강화

교육[지원]청

-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 교육(지원)청 단위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대면, 1회)
- O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업무담당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연수 지원

각급 학교

-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교 관계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이수(전북교육연수원, 상시운영)
 - 감염병 발생 시 가정의 협조 및 유의 사항 등을 가정통신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학교 자체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대면, 1회/연)

■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확산 차단 등 후속 대응 철저

교육(지원)청

○ 모니터링 강화

-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매일 관내 감염병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지역 유관 기관과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으로 학교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

각급 학교

○ 유행 감시 및 보고 철저

-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등교중지 안내 및 의료기관 진료 안내 등 조기 치료 교내 감염병 확산 차단
- 학교장은 교내 감염병 발생 현황을 인지 즉시 나이스 입력 보고
 -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은 보고 절차 준수 및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 나이스 시스템의 보건소 신고 기능 활용(법정감염병 환자신고양식), 서면 신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 팩스, 전화 활용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 학교 결핵관리지침 준수 및 결핵검사 실시로 교내 확산 방지
 - 중·고등학교는 학생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에 따른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 유증상자 조기 발견·치료 도모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해 입소 전 결핵 X-선 검진을 받도록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 기숙사 입소 예정 학생에 대한 결핵 X-선 검진은 무료이나, 일부 보건소는 사정에 따라 유료로 실시될 수 있으니. 사전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 환자 발생 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각급 학교 `

○ 예방접종력 확인 및 접종 홍보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및 미실시 학생에게 접종 안내
- 국가 표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https://bit.ly/3W4SsN9)
 -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사업내용: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지원
 -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 지원백신: 총 17종

연번	접종명	연번	접종명	
1	결핵(BCG, 피내용)	10	폐렴구균	
2	B형간염(HepB)	11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12	수두(VAR)	
4	파상풍/디프테리아(Td)	13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5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14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6	폴리오(IPV)	15	A형간염(HepA)	
7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 오(DTaP-IPV)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8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 IPV/Hib)	17	인플루엔자(IIV)	
9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총 17종		

■ 필수방역물품 구비 및 학교 방역관리 상황 점검

각급 학교

- 필수 방역물품 비축
 - 학기 초 '학교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에 따라 방역물품 구비 ※ 학교 현장대응 방역물품 비축 및 모형 개발 안내 예정('23~'24)

-<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예시)>

- *(체온계) 각 교실 1개, 보건실 2개, 통학버스 1개
- *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장(소아용 포함)
- *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교실 2개, 보건실 4개, 교무실, 식생활관 및 특별실 1개 등
- * 소독티슈, 의료용 장갑 등
- O 학교 방역관리 철저
 - 정기 및 임시 소독 실시*(4~9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10~3월은 3개월 1회 이상, 시설 관련 부서 시행 협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 행정사항

- 학교 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도교육청 보고 【서식 12】. 【서식 13】
 - 보고 대상: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A형간염으로 진단받은 자 및 의심환자(학생 및 교직원)
 - 보고 시점
 - 1차 보고: 감염병 환자(의심, 확진) **발생 인지 후 즉시(최초)**
 - 2차 보고: 학교 역학조사(접촉자 조사) 실시 직후 1회 서면 보고
 - 3차 보고: **추가 역학조사(접촉자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장 마지막 조사가 완료된 후 **최종 결과**를 정리하여 추가 **서면 보고**

··< 감염병 발생 보고 체계 >·····

- ❖ 최초보고[서식 12]: 감염병 환자발생 직후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동시 보고
 - 도교육청: 학교안전과(학생안전관리지원단) 이메일(jbe119@jbedu.kr)로 자료 발송 후 유선통화(☎ 239-3119)
 - 교육지원청: 메신저, 유선전화, 팩스 활용
- ❖ 서면보고[서식 13]: 역학조사 실시 직후 및 최종 결과(감염병 완치 등)를 도교육 청·교육지원청에 동시 보고
 - 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수신자: 학교안전과)
 - 교육지원청: 업무관리시스템(수신자: 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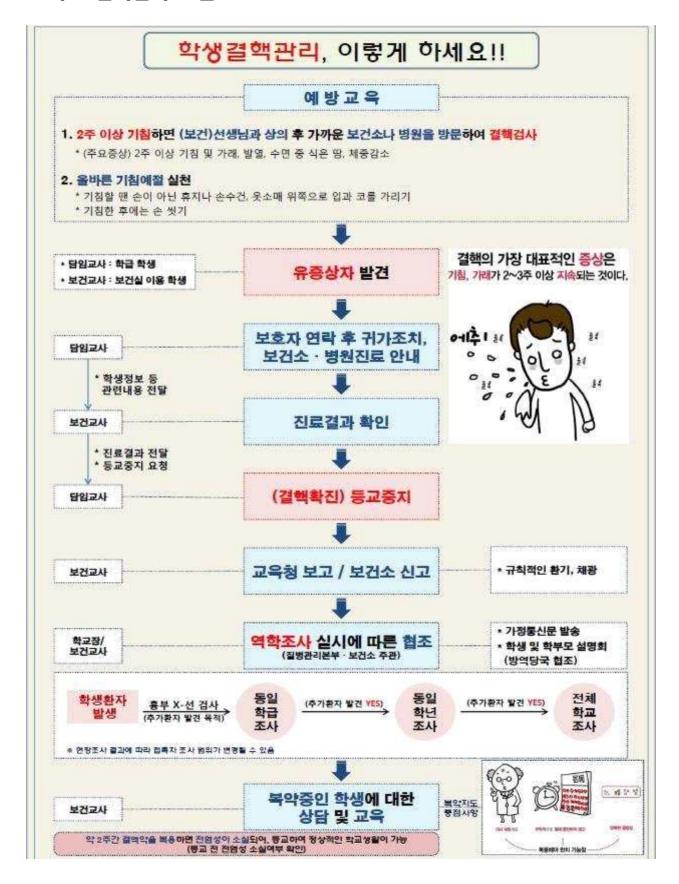
□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 법정감염병 4개급 87종(제1급 17종, 제2급 21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

구분	1급 (17종)	2급 (21종)	3급 (26종)	4급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u>유행</u>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u>24시간</u>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 [~]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 이 필요한 감염병
종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잘티푸스 비를 지하는 지를 하는 이 그 이 하는 이 그 이 하는 이 하는 이 이 하는 이 이 하는 이 이 이 하는 이 이 이 하는 이 이 이 이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다. C형간임 마. 발진되다 마. 베시리리 프스 바. 비브리티푸스 자. 발진열무시리증 하. 발진열무시리증 함. 브진드를 무실를 무실을 무실을 무실을 무실하는 이 스트를 보이 이 스트를 보이 이 스트를 보이 이 스트를 보이 이 스타를 보이 되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가. 이플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2022.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질병관리청)

□ 학교 결핵관리 흐름도



2 건강한 체중 유지·관리 활성화

저체중 및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정 체중 유지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저체중·비만·고혈압·당뇨 등 예방

□ 기본방침

- O 건강관리의 생활화로 학생이 건강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O 가정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종합적 질병 예방·관리체계 운영
- O 학교 내 분야별·교과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틈새 실천 활동 유도 및 정기적 지도 도모

□ 현황

- O 최근 생활 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저체중 및 비만 등 생활습관성 질환 증가**
- O 저체중율: 체질량지수가 20미만인 학생의 비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一十七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u></u>	2.1	3.3	2.7	4.9	5.7	5.3	4.5	4.7	4.6
중	2.8	2.4	2.6	2.6	5.3	3.9	4.1	3.6	3.8
고	3.1	4.2	3.9	5.8	6.2	6	6.1	5.4	5.8
계	2.7	3.3	3.1	4.4	5.7	5.1	4.9	4.6	4.7

※ 자료출처: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전북)

O 비만율: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학생의 비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व	계
 초	28.3	17.3	23.1	27.6	15.3	21.6	23.3	18.7	21.0
중	19.5	14.7	16.9	26.1	16.4	21.2	20.4	17.2	18.8
고	33.4	18.7	24.4	29.2	18.5	23.5	23.6	19.5	21.5
계	27.1	16.9	21.5	27.6	16.7	22.1	22.4	18.4	20.4

※ 자료출처: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전북)

□ 추진방향

교육(지원)청

- O 건강증진 중점학교 시범 운영을 통한 실천형 교육자료 개발 보급
- 저체중·비만·고혈압·당뇨 예방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O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실천 교육 활성화 지원
- O 건강검사 결과 기반 건강증진 정책 수립 추진

각급 학교

- O 매 학년 초 저체중·비만·고혈압·당뇨 예방 등 학생건강관리 계획 수립 운영
 - 매 학년도 3월 말까지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저체중·비만· 고혈압·당뇨 예방 및 건강관리 시행
 - * 중간놀이 프로그램[방과후 놀이과정, 틈새신체활동(7560⁺운동), 학교급식(채식의 날 운영, 저염식·저당식 식단 제공 등)]
- O 학생 건강검사를 통한 저체중·비만·고혈압·당뇨 학생 조사 및 추후 관리
 - 가정과 연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 O 학생의 건강한 체중을 위한 건강증진팀(보건·체육·영양교사, 학생대표) 조직·운영
 - 저체중·비만·고혈압·당뇨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생활습관교육,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식이요법 등 영양상담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 관련교사 협력을 통한 정기적 추진

□ 행정사항

-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비만예방) 현황 보고 【서식 6】
 - 기한: 학교(2023. 12. 6.까지) → 교육지원청(2023. 12. 12.까지) → 도교육청
- O 학교 내 건강증진팀 조직 및 운영 결과 보고 【서식 6】
 - 기한: 학교(2023. 12. 6.까지) → 교육지원청(2023. 12. 12.까지) → 도교육청

3 학생 시력 보호 및 구강·아토피질환 예방

시력 보호 및 구강·아토피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 도모

□ 기본방침

- O 학생 시력보호 교육 및 관리 강화
- O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 지도 활성화
- O 구강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으로 평생 구강건강 토대 마련
- O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유도하는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교육 실시

□ 근 거

- 「학교보건법」제9조의2(보건교육 등)
- 「구강보건법」제12조(학교구강보건사업)
-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2022.12.9.)

□ 현 황

- O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조사, 2021.)
 -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구분	남여	2019	2020	2021
전국	계	38.5	32.6	22.6
	계	49.1	44.1	36.7
전북	남	38.5	32.8	28.3
	여	60.8	56.4	45.9

-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 경험률(%)

구분	남여	2019	2020	2021
전국	계	22.5	23.3	22.4
	계	24.4	23.3	23.7
전북	남	21.5	20.7	21.0
	여	27.6	26.2	26.7

□ 추진방향

교육(지원)청

-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컨설팅
 - 시력 보호 및 구강건강 관리교육 동영상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아토피질환 학생을 위한 도내 아토피안심학교 운영: 조림초, 부귀중
 - 학교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강구
- O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사업 관리 및 지원(별도 안내 예정)
 - 개별 맞춤형 진료비를 14개 시·군 내 협약·지정된 치과 병(의)원에 지급

각급 학교

- 교육 및 실천 강화
 - 학생 시력보호 교육 및 시력 강화 운동 실천 지도
 - 수업 시작 전 1분 시력 강화운동 및 시력 보호·관리 교육 실시
- 학생 구강질환 예방 교육 및 지도
 - 학년 초 구강위생 도구 준비 및 중식 후 양치질 실천 지도 강화
 - 도내 보건소와 연계한 구강보건사업 협력 추진(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 학교 내 개인위생 시설 보완 및 확충으로 잇솔질 시설 제공(행정실 협조)
-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별도 안내 예정)
 - 도내 초등 4학년 학생 구강검진 및 개별 맞춤형 진료 관련 교육 실시 등
 - O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 실시
 - 아토피질환 학생을 위한 도내 아토피안심학교 적극 활용: 조림초, 부귀중
 - 아토피질환을 예방하고 증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방법 지도
 - 지역 내 시·군 보건소의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사업 적극 활용

□ 행정사항

- O 학생 구강관리 실적 보고 【서식 7】
 - 기한: 학교(2023. 12. 6.까지) → 교육지원청(2023. 12. 12.까지) → 도교육청
-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참여 현황 보고(서식별도 안내 예정)

4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 건강증진 및 평생 건강 토대 마련

□ 기본방침

- O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 강화
- O 학생 발달 시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방법을 통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접근 예방교육 강화

□ 근 거

-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및 제9조의 2(보건교육 등)
-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O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O 2023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2, 2023.1.3.)

□ 현황

- O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거래 증가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 마약류 사범 증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과다·중복처방 문제 등 심화
 -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22.6월)
 - ※ 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 학생용 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 등 홍보자료(총 21종) 교육부 개발·보급 완료
- O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신종 마약류 증가, 해외유학에 따른 마약류 노출 증가 등으로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 O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증대
 - 각급 학교별로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 예방교육 실시

O 마약류 사범 연도별·연령별 현황: 19세	이하는 승가	주세임.
--------------------------	--------	------

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1.5%)	(21.9)	(25.7)	(21.7)	(15.9)	(10.0)	(3.2)	(100)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2020	(1.7%)	(24.9)	(25.0)	(19.9)	(13.4)	(12.4)	(2.6)	(100)
2021	450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021	(2.8%)	(31.4)	(25.4)	(16.5)	(12.3)	(9.6)	(2.0)	(100)

※ 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1 마약관련 통계자료(전국)

- **청소년 흡연율 성별·연도별 현황**(출처: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 현재 흡연율: 지난 한달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구분	성별	2019	2020	2021
 전국	계	6.7	4.4	4.5
	계	6.7	6.6	5.6
전북	남	8.7	10.2	7.2
_ ,	여	4.5	2.7	3.9

- 매일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매일 일반담배(궐련)을 흡연한 사람의 비율(%)

구분	남여	2019	2020	2021
전국	계	3.2	2.3	2.3
	계	3.5	3.6	3.1
전북	남	5.0	5.8	3.9
·	여	1.9	1.1	2.2

□ 추진방향

■ 모든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 O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 점검 및 컨설팅 시행
 -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관내 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미실시 학교에 대한 행정 지도 등 컨설팅 강화
 - ※ '학생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제출 양식 변경【서식 8】

-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활용 ※ 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 학생용 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 등 홍보자료 (총21종)
- O 교직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참여 등 적극 홍보 및 안내 조치

각급 학교

- (흡연·음주 예방)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초등 2회 이상, 중·고등 1회 이상 의무 교육 실시
- O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모든 학교에서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 O (특별교육주간 운영)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특별주간을 연 1회 운영 권고
 - ※ (예시) 약물 오·남용 예방 특별주간: 흡연예방(월,화), 음주예방(수,목), 마약류 접근예방(금)
- O 흡연 및 음주 저연령화 방지를 위하여 초등 저학년 대상 예방교육 철저
 - 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실시
 - ※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전 학부모 사전 교육(가정통신 등) 실시

■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학교문화 조성

각급 학교

-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 학교 내 흡연실 설치 일체 금지
 - 교직원의 흡연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철저
- O 교직원 및 외부인 대상 학교 내 흡연 금지 사전안내로 학생 건강권 보호
- O 학교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운영 적극 참여(세부사항 별도 안내)
 - 금연실천 선포식, 학급별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업무담당자 연수 참여, 금연프로그램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 학교 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지도

각급 학교

- O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에 중독된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 내 협력체계 구축·운영(보건·상담·생활지도부교사 등)
- 유관기관(지자체, 보건소, 마약퇴치운동본부, 약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외부 강사 활용 교육 시 학교 교사 임장 필수

■ 흡연·음주 실태 기초조사를 통한 학교 흡연예방사업 성과평가 실시

각급 학교

- O 학교급별 흡연·음주 실태 기초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흡연예방 지도 실시
 - 조사대상 및 시기: **저학년 및 고학년 구분 조사 [상반기(3월), 하반기(10월)]**
 - 조사방법: 설문지【참고자료 6】
 - 결과처리: 흡연·음주 학생 현황 보고 및 학교 자체의 흡연예방교육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전·후 비교 분석)

■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통한 학생 마약류흡연음주 내용 포함 예방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 학교장·업무담당자·교직원 대상 마약류·흡연·음주 내용을 포함한 연수 지원 및 참여 활성화
 - 학교장·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2023년 5~10월 중 예정, 도교육청 주관)
 - 학교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교육지원청 주관)

각급 학교

- O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실시
- O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정과 연계(정보자료 공유)
- O 업무담당자가 관련 직무연수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행정사항

- 학생 흡연·음주실태 조사결과 보고 【서식 2】
 - 기한

(상반기) 학교(2023. 4. 7.까지) → 교육지원청(2023. 4. 14.까지) → 도교육청 (하반기) 학교(2023. 10. 6.까지) → 교육지원청(2023. 10. 13.까지) → 도교육청

-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적 보고 【서식 8】
 - 기한: 학교(2023. 12. 6.까지) → 교육지원청(2023. 12. 12.까지) → 도교육청

Ⅲ. 학생 건강검사 및 보건실 운영 활성화

- 1.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추후관리 철저
- 2. 학교 응급환자 및 건강요주의자(소이당뇨 등) 관리
- 3. 안정적인 학교 보건실 운영

1 학생 건강검사 및 추후관리 철저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사를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 도모

□ 기본방침

- O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질병 등 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교육·상담, 치료 유도 등 적절한 방안 강구

□ 근 거

- ○「학교보건법」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보건법」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 「학교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교육부고시 제2020-217호, 2020.2.13.)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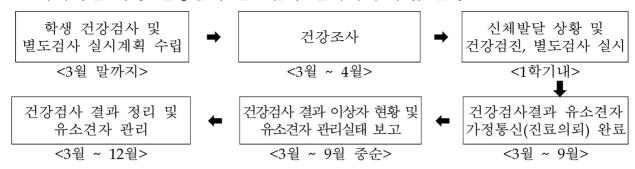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중단('20)되었던 **학생 건강검사가 재개('21)**
- O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 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O 현행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방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및 검진기관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개선 요구도 증가
- 최근 3년간 학생건강검진 실시 및 추후관리 현황

조사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						
년도	검진완료자	검진완료자 유소견자 (A) : 시력, 소변, 혈액, 구강 등		추후관리 비율 (C -B /A*100)				
2020	19,552 (80.4%)	9,552 (48.9%)	8,583	89.9%				
2021	62,174 (99.8%)	32,877 (52.9%)	29,273	89.1%				
2022	43,523 (99.1%)	23,287 (53.5%)	23,110	99.2%				

[※] 검진대상: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전북)

□ 추진체계

O 체계적인 학생 건강검사·별도검사 실시계획 수립 운영



- O 학생건강검사 항목 【참고자료 7】
 - 건강조사,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검진, 별도검사

□ 추진방향

■ 학생 건강검사 추진

교육(지원)청

- 각급 학교에서「학교보건법」제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건강검사 소요예산 확보·지원, 별도검사 항목별 대상학년 선정, 건강조사에 필요한 구조화된 설문지 제공 등 학교에서 건강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각급 학교

- 검진기관 및 검진 시기 결정 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 최소화【참고자료 8】
 - 검진 예약제로 다수의 학생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 방지
 - ※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별도의 선정완화 숭인절차 없이**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O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실시에 따른 검사결과 작성 및 제출
-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추후관리
-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1학기 내에 검사 완료**

- 학생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유도 등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행정사항

- 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 검사결과 작성·보고
 - 건강검사 표본조사 대상교로 2021년에 지정된 학교에서는 9월 말까지 건강 검진 및 건강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나이스를 통해 제출**
 - 기한: 학교(2023. 9. 22.까지) → 교육지원청(2023. 10. 6.까지)→ 도교육청
-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학생건강검진결과 이상자 현황 및 유소견자 관리 실태, 학생 별도검사 실시 현황 보고 【서식 9~11】
 - 기한: 학교(2023. 12. 6.까지) → 교육지원청(2023. 12. 12.까지) → 도교육청
- 학생 건강검사 결과 감염병(결핵 등) 의심 학생 발견 시 즉시 관할 보건소 및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유선 보고 후 나이스 제출 및 서면 보고) 【서식 12, 13】

□ 참고사항

- O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유권해석 결과
 - ◇ 검진기관으로 숭인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은 보건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학교건강검사 '구강검진' 기록은 미실시로 처리하고, 자료(보건소 검진 결과 등)는 첨부
 다만,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등 사실상 승인받은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소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 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2 학교 응급환자 및 건강요주의자(소아당뇨 등) 관리

학교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처 및 건강요주의자 관리를 통해 학교구성원의 2차 손상 최소화 및 건강유지·증진 도모

□ 기본방침

- O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 확보
- O 응급상황 시 전문성 있는 즉각적 대처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전문가 연수 등 지원
- O 학교 내 건강요주의자(유질병자)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지속적 관리
 - 건강요주의자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근 거

-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2018.5.29.시행)
- O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O「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2019

□ 현 황

-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제15조의2 신설, 2018. 5. 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추진방향

■ 체계적인 응급환자 관리대책 수립

각급 학교

- 학교 응급환자 대책 수립 및 신속 대응
 - 학년 초에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수립 【참고자료 9】
 - ** 학교 내 응급환자 구조 활동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환자 후송 등 응급상황 대처 시 모든 교직원이 협력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 학교 실정에 맞게 교직원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하게 대응
 - 학년 초 건강요주의자(유질병자) 명단 확보 및 지속적 건강관리 추진 【참고자료 10】

■ 소아당뇨 학생 지원·관리 내실화

교육(지원)청

- 보건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지원
 - 도교육청 주관 보건교사 대상 소아당뇨 관련 직무연수 운영

각급 학교

- 소아당뇨 학생 관리체계 마련
 -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
 - ※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 소아당뇨학생 학교지원체계 구성
 -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하며, 칸막이(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처방받은 응급의약품(글루카곤 등)에 대한 보관장소 제공
 -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소아당뇨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보고【서식 3】
 - 기한: 학교(2023. 4. 14.까지)→ 교육지원청(2023. 4. 21.까지) → 도교육청
 - ※ [서식3]를 근거로 제출 관련 공문은 추후 안내 예정

□ 학교 내 응급환자 구조 활동 표준화 지침

★ 2012년도에 각급 학교에 기 배부한 자료「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교육부 2011.12.)」 참고

☞ 응급환자 발생 시 교직원 행동 안내

- ◆ 최초 발견 교직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한다. 먼저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 ◆ 다음의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감전, 가스누출, 건물붕괴, 화재, 폭력사고, 안전 사고로 인한 척추손상 등
- ◆ 응급환자 발생 시 보건교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비의료인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응급상황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19 구급대에 곧바로 연락을 취한다.
- ◆ 보건교사가 응급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교직원이 반드시 계속해서 응급 환자를 관찰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 응급상황에서 물, 약물 등의 경구(입) 투여는 삼간다.
-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증의 부상이나 아픈 학생은 이동시키지 않는다. 꼭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과 등을 응급처치 방법대로 지지한 후 이동한다.
- ◆ 보건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환자의 활력증상을 측정하고 환자를 사정한다.
- ◆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상황을 학교장에게 보고 후 <u>보건일지에 환자의 상태 및</u> 응급처치 내용, 이송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 ◆ 필요한 경우 119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일반차량(승용차)으로 후송 시에는 운전자와 관찰자 등 최소 2명 이상이 후송한다. (보건교사 동행의 경우 환자 관찰 및 처치를 위하여 보건교사는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 위급하거나 위독할 경우

- ◆ 보건교사: 응급처치 후 119 연락 또는 다른 후송방법 모색
- ◆ 환자발생 및 후송방법 보고 : 학교별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보고체계(예시): 담임·보건교사 → 교감, 교장/ 담임·보건교사 → 교감 → 교장
- ◆ 담임교사: 부모에게 연락
-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 ◆ 학생 진료상황을 학교에 보고하고 학부모 위로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 ◆ 보건교사: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 ◆ 환자 발생 및 후송방법 보고: 학교별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 담임교사: 부모에게 연락
-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병원을 선택하고 해당병원에 알려 <u>신속하게 치료받을 수</u> 있도록 조치
- ◆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 보건교사는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교내에 대기하는 것이 좋으며, 담임교사가 부재중이거나 학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후송할 수 있다.
- ◆ 교사가 병원후송으로 부재 시 교감은 대체 교사 지정
- ◆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는 치료 상황을 병원과 연락하여 수시로 학교에 보고

☞ 119 구급대를 불러서 후송해야 하는 경우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단,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환자를 일반차량으로 후송하여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119 구급차에 비해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병원 후송 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후송 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판단이 모호할 경우: 119에 전화 문의

☞ 행정지원

- ◆ 병원 후송 시 환자 후송교사는 출장 처리
- ◆ 교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후송비는 학교회계예산에 편성

☞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사후 처리

◆ 보건교사는 잦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건강행태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대책을 건의한다.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3 안정적인 학교 보건실 운영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학교 내 건강증진센터로서 학교보건실 설치·운영 내실화

□ 기본방침

- O 적정 보건실 면적 및 시설·기구 확보
- O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보건실 운영
- O 보건실 현대화 환경 조성으로 수요자 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센터 역할 강화

□ 근 거

- O「교육기본법」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O「학교보건법」제3조(보건시설 등),「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 O「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 현 황

O 학교 보건실 설치 및 현대화 지원 현황

(2022. 12월 기준, %)

그별	전체	- ' III			대화 지원 ~'22년)		
	학교수	독립형	비독립형 (겸용)	계(비율)	학교수	학교수	비율(%)
 초	422	383	20	403(95.5)	19	284	67.3
	211	195	11	206(97.6)	5	150	71.1
고	133	127	4	131(98.5)	2	113	85.0
특수	10	10	0	10(100)		10	100
합 계	776	715	35	750 (96.7)	26	557	71.8

□ 추진방향

- 모든 학교에 보건실 설치 및 시설·기구 확보
 - 보건실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 (단,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치)
 - 보건실 면적
 - 보건교사 배치교: 66㎡ 이상(단, 10학급 이하 및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33㎡ 까지 완화 가능)
 - •보건교사 미배치교: 33m² 이상(단, 학교 실정에 따라 교실이 부족한 경우 관리실 및 담당교사 교실 겸용 가능)
 -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장은 법정 보건실 기준 이상의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조치
 - 학교 신설 시 학교보건법령에서 정한 위치 및 충분한 면적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
- 보건실 설비 및 시설 개선·확충 등 보건실 운영 관리 강화 【참고자료 4, 5】
 - 보건교육, 응급처치, 건강상담을 위한 보건실 구조개선: 업무실, 처치실, 안정실, 건강검사(상담)실, 보건교육실로 운영
 -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상 보건실 기준 이상의 시설·설비
 - 보건실의 구조
 - 안정실: 남·여 구분, 침대는 1인용 사용
 - 건강검사(상담)실: 검사기구(시력, 체성분검사 등) 및 상담 테이블, 의자 비치
 - 처치실: 드레싱카, 진찰대, 진찰의자, 자외선 소독기, 멸균기, 스탠드라이트, 세면대, 세족기, 순간온수기, 핸드타월기 설치
 - 업무실: 학생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 칸막이(파티션) 설치 시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
 - 보건교육실: 시청각 기자재 및 보건교육자료 비치
 - ※ 보건교육실은 보건실 근접 또는 보건실 내에 설치하여 응급상황시 신속히 접근·대처

- ■보건실 내부시설은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 바닥은 미끄러운 자재사용 제한, 학생 대기의자 준비, 보건실 창문은 화재 시 긴급 대피를 위하여 방범창 사용 자제
- 보건실 약품 및 기구 관리 철저(약품 유통기한 점검 및 오·남용 방지) 【참고자료 3】
- 교육지원청 및 학교장은 학교 보건실이 휴게실 등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 보건(담당)교사 부재 시 보건실 운영 및 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학년 초에 직무대행 교원 지정 및 학교 내 홍보**
- 수업, 출장, 연수 등으로 학교 내 보건(담당)교사의 부재 시 학교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 안내 조치
- 학교별 효율적인 보건실 운영을 위한 보건실 현대화 환경 개선 및 운영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
 - ※ 교육(지원)청에서 기 지원하여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학교에서 보건(교육)실을 타 용도 교실로 전환하지 않도록 유의

○ 보건실 기능의 내실화

- 매 학년 초에 보건실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교육 및 보건실 이용방법 지도
-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로써 충분한 역할 수행
- 보건실의 기능 활성화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O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실 운영 등 보건업무 담당교사제 운영
 -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학교장은 일반교사 중 1명을 보건업무 담당교사로 지정하여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행정사항

- 학교 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보고 【서식 4】
 - 기한: 학교(2023. 4. 14.까지) → 교육지원청(2023. 4. 21.까지) → 도교육청

Ⅳ. 제출 목록 및 서식

- 1. 제출 목록
- 2. 제출 서식

1. 제출 목록

※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

※ 교육지원청에서는 취합·집계 후 서식에 맞춰 인성건강과로 제출

וג נג	니 ㅋ 기 Al	보고기한				
서식	보고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1	보건교육 추진 현황(계획 및 실적)	(계획) 2023. 3.31. (실적) 2023.11.24.	(계획) 2023. 4. 7. (실적) 2023.12. 8.			
서식 2	학생 흡연·음주 실태조사 결과	(상반기) 2023. 4. 7. (하반기) 2023.10. 6.	(상반기) 2023. 4.14. (하반기) 2023.10.13.			
서식 3	소아당뇨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2023.4.14.	2023. 4.21.			
서식 4	학교 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2023.4.14.	2023. 4.21.			
서식 5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결과	2023.12.6.	2023.12.12.			
서식 6	학생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비만예방) 현황	2023.12.6.	2023.12.12.			
서식 7	학생 구강관리 실적	2023.12.6.	2023.12.12.			
서식 8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2023.12.6.	2023.12.12.			
서식 9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3.12.6.	2023.12.12.			
서식 10	학생건강검진결과 이상자 현황 및 유소견자 관리 실태	2023.12.6.	2023.12.12.			
서식 11	학생 별도검사 실시 현황	2023.12.6.	2023.12.12.			
서식 12 서식 13	감염병 발생에 따른(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발생 시				

2. 제출 서식

[서식 1]

보건교육 추진 현황

기관명	:

1. 학교 보건교육 추진 계획 및 실적(계획은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보고)

					보건교육 추진계획 수립현황						학급 당	당 연평	균 수입	걸시수 ³)
학교 급별 ¹⁾		전체 학교수 보건교사 보건교육 시수 확보 방법 ²⁾ (1개 학년 이상) (해당 칸에 '1'로 기재, 중복 표기 가능)													
			마바치=X)	17시간 이상	17시간 이만	보건 (선택교과)	창체활동	관련교과	교과 통합 등 기타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ュ														
	초														
특	중														
수	고														
	소계														
합	계														

- ※ 보건교사 배치교에서는 「학교보건법」제9조의2, 제15조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부 지침에 의해 모든 학교는 최소 1개 학년 이상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수업)을 실시해야 함
- ※ 작성 방법
- 1) 학교급별로 작성하며 **분교**는 본교에 포함하여 작성/ **특수학교**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맞춰 작성/ **통합학교**는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맞춰 작성
- 2) 보건교육 시수 확보방법: 해당 칸에 '1'로 기재(중복표기 가능)
- 3)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해당학년 학급수
- (단, **복식학급**인 경우 대표학급을 기준으로 기재)
- 2. 보건교육 계획 미수립(또는 보건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가. 학교의 조치계획

- (개조식으로 작성)
 - 나. 교육지원청의 조치계획

○ (개조식으로 작성)

[서식 2]

학생 흡연·음주 실태조사 결과

.1 -1 -1		
刀斗り	•	
/ [건 0	•	

(단위: 명)

									<u> </u>
급	-1		대상		Ğ연 학생←	<u></u>	<u>C</u>	음주 학생	<u> </u>
별	학교수	학년	대상 학생수	3월 (A)	10월 (B)	변화도 (C=A-B)	3월 (A)	10월 (B)	변화도 (C=A-B)
		5							
초		6							
	소	계							
		1							
중		2							
3		3							
	소	계							
		1							
고		2							
	소	계							
	계								

※ 작성 방법

- 시기: 상반기(3월), 하반기(10월)
 - 상·하반기 별도 실태조사* 후 작성 보고(**누계작성 아님**)
 - * 실태조사는 익명으로 실시하며, 조사문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시행[참고자료 7]
- 대상: 초 5학년 ~ 고 2학년 전체
- 상반기 보고시 흡연·음주 학생은 3월(A)만 작성
- 하반기 보고시 3월(A)·10월(B)·변화도(C) 까지 작성

[서식 3]

소아당뇨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현황

※엑셀서식 보고

기관명	
/ TU 0	

- □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3.4.1 기준)
 - 1. 소아당뇨 학생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가 배치교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중						
고						

- * 전체학교수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 시 교육지원청 소속 모든 학교의 수를 기재함
-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 *** 해당없는 학교의 경우 자료집계 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제출바람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지원 항목>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보관: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복표기)**

학교급	지원항목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초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소계			
	직접 주사			
	주사 보조			
- 중	투약장소 제공			
8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소계			
	직접 주사			
	주사 보조			
고	투약장소 제공			
<u> </u>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소계			
	합계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에 학생 현황('23.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교,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호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서식 4]

학교 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기고나다	
	•
/ I L O	•

1. 학교 보건실 설치 현황

1. 19		1	<u> </u>									
			보건실 설치					보건실 미설치				
기관명	학교 급별	학교 전 체급별 학교수	전 체	독립	실형	비독립형	형(겸용)	계			선실 🏻	설계
/1단경	급별	학교수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설치완료	
			(A)	刊色	(B)	日色	(C=A+B)	刊色	(D)	刊色	시기(예정)	
	초											
	중											
	고											
	특수											
	계											

- ※ 전체 학교수 = C + D
- ※ 비독립형(겸용) 보건실 설치 학교수(B) = 기타 특별실 등에 공용으로 보건실이 설치 된 학교수
-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에 따라 **학교에 보건실을 의무 설치해야 함**

2. 학교 보건실 설비·기구 충족 현황

기관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기준충족 학교수					
	충 족 율					

※【참고자료 7】을 기준으로 필수요건이 충족된 경우는 100%로 기재

3. 학교 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전 체 학교수			보건교육실					
기관명 급	학교 급별		독립	형	보건실과 겸용 설치		기타 다른 교실과 병용 설치		미설치 학교수	
			학교수(A)	비율	학교수(B)	비율	학교수(C)	비율	학교수(D)	비율
	초									
	중									
	고									
	특수									
	계									

- * 전체학교 + B + C + D
- * 독립된 보건교육실 설치 학교수(A)=단독 보건교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수

[서식 5]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결과

1. 전체 현황

(단위 : 교)

	저체	보건교사	배치 학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구분	전체 학교수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계획 수립 학교수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계획 수립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 보건교사 배치 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 포함

2. 교육활용 시간 현황

* 해당란에 '1'로 표기하며, 교육에 활용한 시간은 중복 표기 가능

(단위 : 교)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미실시			
	학교수	보건교과	기타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3. 교육실시 학년 현황

(단위 : 교)

7 H	교육실시	교육실	교육실시 학년(해당란에 '1'로 표기)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1개 학년 교육	2개 학년 교육	3개 학년 이상 교육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4.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 교)

	학교	내부 강사활용 🤅	학교수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수			
구분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i>(</i>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 중복표기 가능

[서식 6]

학생 건강한 체중 관리(저체중 • 비만예방)* 현황

기기 메	
기과명	•
/ 1 년 0	•

1. 건강한 체중(저체중 및 비만 예방) 관리 실적

추진 사항	구분	전체 학교수 (A)	실시 학교수 (B)	실시 학교 교육과정 내 교육 실시	수(※중복표기 가능) 교육 외 학교주관 학생참여 활동 실시	미실시 학교수 (C)	비고
	초						
-1 -1 -1	중						
건강한 체중관리	고						
, 0 2 1	특수						
	계						

^{*} 건강한 체중관리: '비만'과 '저체중'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 작성 방법

- A(전체학교 수) = B(실시학교 수) + C(미실시학교 수) ⇒ 100% 실시
- 교육과정 내 교육실시 학교수
- 관련교과, 보건, 창체활동, 범교과활동 등의 수업시간에 학급단위로 실시한 경우 작성
- 교육 외 학교주관 학생참여 활동 실시 학교수
 - 교육과정 외 일부 또는 전체학생이 참여한 학교주관 건강한 체중관리 활동(각종행사 개최, 프로그램 운영, 특별강연, 홈페이지 자료탑재 등)을 실시한 경우
-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1' 로 표기

2. 저체중 및 비만 학생 현황

가.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전체			검사	비민	<u></u> 노(체	질량지수	늗)에 따	h른 학생	 냉수	체중관리 프로그램	건강증진팀
급별	학교수	학년	성별	학생수	저체중 학생수	비율 (%)	과체중 학생수	비율 (%)	비만 학생수	비율 (%)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학교수 (운영교는 '1'로 기재)	건강증진팀 조직 및 운영 (운영교는 '1'로 기재)
			남									
		1	여									
			계									
			남									
		2	여									
			계									
			남									
		3	여									
초			계									
/			남									
중		4	여									
/			계								•	
고			남									
		5	여									
			계								•	
			남								•	
		6	여									
			계									
			남									
	합 :	계	여									
			계									

나. 특수학교

- 특수학교는 위 표를 활용하여 초, 중, 고등부별로 구분 제출

※ 작성 방법: 나이스 / 보건 / 학생건강현황통계관리 / 신체발달통계조회 활용

[서식 7]

학생 구강 관리 실적

1. 구강 관리 실적

	구분	전체	실시	실시 학교	.수(※중복표기 가능)	미실시	
추진 사항		전체 학교수 (A)	실시 학교수 (B)	교육과정 내 교육 실시	교육 외 학교주관 학생참여 활동 실시	미실시 학교수 (C)	비고
	초						
	중						
구강 관리	고						
	특수						
	계						·

※ 작성 방법

- A(전체학교 수) = B(실시학교 수) + C(미실시학교 수) ⇒ 100% 실시
- 교육과정 내 교육실시 학교수: 관련교과, 보건, 창체활동, 범교과활동 등의 수업시간에 학급단위로 실시한 경우 작성
- 교육 외 학교주관 학생참여 활동 실시 학교수
- 교육과정 외 일부 또는 전체학생이 참여한 학교주관 구강관리 활동(각종행사 개최,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연계 구강관리, 특별강연, 홈페이지 자료탑재 등)을 실시한 경우
-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1'로 표기

[서식 8]

학생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٦.			
フ	관명		
/	1 T 7	- 1	

1.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구분		전체 '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7 L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ㆍ남용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작성 방법

- 모든 학교가 100% 실시해야 함
 - ※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초등 2회 이상, 중・고등 1회 이상 의무 교육 실시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의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별표6] : 연간 10시간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1'로 표기
- 분교는 본교에 포함하여 '1' 로 작성함
- 2.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가. 학교의 조치계획

○ (개조식으로 작성)			

나. 교육지워청의 조치계획

○ (개조식으로 작성)

[서식 9]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_1 -1 -1		
기과명	•	
/ 1 년 0	•	

1. **초 1 · 4학년, 중 · 고 1학년 건강검진**(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단위 : 교, 명, 원)

급별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 학3	·검진 교수	전:	체 학생]수	검진.	완료 힉	·생수	검진미완료 학생수			
	' _	학교수	실시	미실시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비용*
	1													
초	4													
	계													
중	1													
고	1													
	초1													
	초4													
특수	중1													
	고1													
	계													

^{*} 검진소요비용: 전체 집행금액 기재(학생수×1인당 검진수가)

2. 초 2, 3, 5, 6학년 구강검진 현황

(단위 : 교, 명, 원)

급별	학년	전체	건강 학3	·검진 교수	전 2	체 학성	행수	검진	안료 호	낚생수	검진미	완료	학생수	검진	비고 (보건소
급별	악년	학교수	실시	미실시	남	व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소요 비용*	검진시 '1'로 표기)
	2														
- E	3														
초등 학교	5														
弘玉	6														
	계														
	초2														
특수	초3														
학교	초5														
1 4 11/	초6														
	계														

※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 구강진료 시 '구강검진 실시 학교수'와 '비고'란에 동시 표기

[서식 10]

학생건강검사 결과 이상자 현황 및 유소견자 관리 실태

.1 -1 -1		
기과명	•	
/ I L O	•	

1. 초·중·고등학교

									건강검진	<u> </u> 결과 이	상자 현황			추후	관리실시
			ᅰᆀ		검사	거사				유소견	현 항목				
학교 급별	대상 학년	전체 학교 수	검사 완료 학교 수	성별	대상	검사 완료 학생 수	유소견 자수	시력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1 (비만학생)	혈액검사2	X-Ray 검사	구강검사	학생수	비율
	J	\	<u>-</u> 수		자수	<u>ተ</u>	자수 (A)	교정대상 (나안시력 0.7이하)	뇨단백또는 뇨잠혈양성	총 콜레스테롤 상승	빈혈	결핵 (활동성)	치아 우식 또는 치주질환	(B)	C=(B/A)*100
				남											
	1			여											
				계											
				남											
초	4			여											
				계											
				남											
	소 계			여											
				계											
				남											
	1			여											
중				계											
**				남											
		소 계		여											
				계											
				남											
	1			여											
고				계											
				남											
		소 계		여											
				계											
				남											
합	계			여											
				계											

- ※ 유소견자 수(A) = 추후관리 학생수(B) [유소견자에 대해 100% 추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 유소견자 수(A): 학생 1명(동일인)이 각 유소견 항목에서 1가지 이상이 나타난 경우 1명으로 기재
- ※ 추후관리 학생수(B): 유소견자 대상으로 검진기관에서 학부모에게 별도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병원진료 의뢰 등을 실시한 학생 수

2. 특수학교

									건강검진	<u></u> 결과 이	상자 현황			추후:	관리실시
			거시		검사	건사				유소견	현 항목				
학교 급별	대상 학년	전체 학교 수	검사 완료 학교 수	성별	대상	검사 완료 학생 수	유소견 자수	시력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1 (비만학생)	혈액검사2	X-Ray 검사	구강검사	학생수	비율
	, -	弁	수		자수	수	자수 (A)	교정대상 (나안시력 0.7이하)	뇨단백또는 뇨잠혈양성	총 콜레스테롤 상승	빈혈	결핵 (활동성)	치아 우식 또는 치주질환	(B)	C=(B/A)*100
				남											
	1			여											
				계											
				남											
초	4			여											
				계											
				남											
		소 계		여											
		계													
				남											
	1			여											
_				계											
중				남											
		소 계		여											
				계											
				남											
	1			여											
				계											
고				남											
		소 계		여											
				계											
				남											
합	계			여											
				계											

- ※ 유소견자 수(A) = 추후관리 학생수(B) [유소견자에 대해 100% 추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 유소견자 수(A): 학생 1명(동일인)이 각 유소견 항목에서 1가지 이상이 나타난 경우 1명으로 기재
- ※ 추후관리 학생수(B): 유소견자 대상으로 검진기관에서 학부모에게 별도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병원진료 의뢰 등을 실시한 학생 수

[서식 11]

학생 별도검사 실시 현황

기관명

1. 초・중・고등학교

○ 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교, 명, 원)

		전체		소변	l검사			시력	검사			결핵	검사	
급 별	학 년	^{전세} 학교 수	전체 학생수	검사 실시 인원	검사 미실시 인원	소요 비용	전체 학생수	검사 실시 인원	검사 미실시 인원	소요 비용	전체 학생수	검사 실시 인원	검사 미실시 인원	소요 비용
	2													
	3													
초	5													
	6													
	계													
	2													
중	3													
	계													
	2													
고	3													
	계													

2. 특수학교

○ 검사실시 현황

(단위 : 교, 명, 원)

		전체		소변	검사			시력	검사			결핵	검사	
급 별	학 년	학교 수	전체 학생수	검사 실시 인원	검사 미실시 인원	소요 비용	전체 학생수	검사 실시 인원	검사 미실시 인원	소요 비용	전체 학생수	검사 실시 인원	검사 미실시 인원	소요 비용
	2													
	3													
초	5													
	6													
	계													
	2													
중	3													
	계													
	2													
고	3													
	계													

[서식 12] (보고대상) 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최초 보고

< '00.00.00. ○○○학교 >

❖ 보고대상

- <u>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u> 등이 **발생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u>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u> *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 보고체계 : 학교 → 도교육청·교육지원청(동시 보고)
 - 도교육청 : 학교안전과(학생안전관리지원단), 이메일(jbe119@jbedu.kr)로 **자료 발송 후** 유선통화(☎ 239-3119)
 - 교육지원청 : 메신저, 유선전화, 팩스 활용

< 예시 >

□ 일반 현황

○ 학 교 명 : OOOO학교(국·공·사립), 학교장 ○○○

○ 행정구역 : ○○시·군 ○○읍·면(○○교육지원청)

○ 규 모 : 학생 OO명, 교직원 OO명

○ 담 당 자 : 직(담당교과) / 성명 / 연락처

□ 발생 개요

○ 감염병명 : 결핵(법정 제2급 감염병)

○ 발생환자 : 의심 OO명, 확진 OO명, 잠복결핵 OO명

순	이름	학년	반	비고
	김○○			

- 발생인지일 : 20OO년 O월 O일
- 일자별 발생경위 및 조치내용(개조식으로 작성) :
- 주요 조치사항 :
- 향후 조치계획 :

[서식 13] (보고대상) 감염병 발생 조치 보고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00.00.00. ○○○학교 >

◆ 보고대상

- <u>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u>,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 *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 **보고방법** : 서면보고(업무관리시스템)
- ◆ 보고체계 : 학교 → 도교육청·교육지원청(동시 보고) → 교육부
 - 도 교 육 청 : 업무관리시스템(수신자 : **학교안전과**)
 - 교육지원청 : 업무관리시스템(수신자 : **교육장, 부서 미지정**)
- ◆ 보고시기 : 최초 역학조사(접촉자 조사) 실시 직후 1회 보고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역학조사(접촉자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장 마지막 조사가 완료된 후 최종 결과를 정리하여 추가 보고

◆ 주요 보고내용

- 감염병명, 발생 인원 및 현재 환자 수, 나이스 전송 여부 및 보건소 신고 여부
-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경과 상황 및 향후 일정, 관련 협의회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여부 등
- 등교중지 여부, 긴급 방역조치 사항 및 언론사 취재 여부 등

□ 학교 현황

학교명	, 기 기	학교 규도	고(단위:명)	담당	· 장자(성명/연락	 처)	rij =
취교경	소재지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비고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발생인원		나이스	보건소	다음	
실시일	감염병명	환자수	직업	학년/반 (인원수) ¹⁾	보고일 ²⁾	신고일	역학조사일	
23.1.10	결핵	1	학생	2-1(1)	'23.1.3	'23.1.3	'23.1.25	
'23.1.12	백일해	30	학생	1-1(10)	'23.1.3 / 23.1.11	'23.1.11	미정	
'23.2.22	결핵	1	교원	2-3 담임(1)	해당없음	'23.2.21	미정	

- 1)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2)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 (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조사단계		조사자 현황		구기거리	비고
실시일	(최초/중간/ 최종)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조사결과	(또는 조치사항)
		학생	2-1	30	_1.54	
'22.1.10	최초	학생	3–1	3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교원	2-1 담임	1	. 08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Ⅴ. 참고자료

관련자료

- 1. 학생건강증진 관련 법령·고시·지침
- 2. 학생건강증진 관련 참고자료 사이트
- 3.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4.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
- 5. 보건실 현대화 환경 점검표

각 종 양식

- 6. 흡연 및 음주 실태조사 설문지(예시)
- 7. 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 안내(예시)
- 8.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 9.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기록지
- 10. 건강요주의 학생 명단(예시)

[참고자료 1]

학생건강증진 관련 법령·고시·지침

보건교육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2023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감염병 예방

- 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제14조의3(감염병 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 작성 등)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별표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시력 보호 및 구강·아토피질환 예방

- 구강보건법 제12조(학교구강보건사업)
-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별표6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학생건강검사 및 사후관리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의3(건강 검사기록)
- 학교건강검사 규칙
-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37호)

학교 응급화자 및 건강요주의자 관리

-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면책)

보건실 운영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 학교보건법 제15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참고자료 2]

학생건강증진교육 관련 참고자료 사이트

분야	자료 내용	참고사이.	트 주소
	고 오기로 바퀴 시시기	학생건강정보센터 <u>wv</u>	vw.schoolhealth.kr
학생건강 전반	교육자료, 보건소식지 가정통신문 예시	학교보건-신체건강, 성과건경 오·남용예방, 학생건강검사	, 정신건강, 감염병, 약물 등
	범교과학습주제	에듀넷·티-클리어	www.edunet.net
보건교육	보건교육과정	범교과학습주제, 범교과 학습 결맵, 선택교과 교육과정 등	
심폐소생술	7077	대한심폐소생협회	www.kacpr.org
응급처치 교육	교육자료	자료실-심폐소생술동영상 5 (2020 한국심폐소생술 가이	<u> 드라인)</u>
 전문기관	정부 지정 응급처치	행정안전부	https://bit.ly/3QSi5iz
24/12	전문기관	행정안전부-[뉴스·소식-새 ²	··식-알립니다]
	교육부 건강증진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
건강증진중점학교	프로그램 우수사례	건강증진학교 참고자료	
	척추건강 등 건강 자료 관련 모음	전북교육청	https://bit.ly/3Wmsd4s
		인성건강과-부서자료실	1 // 1 /OV 51 4C
	학생감염병 예방 위기대 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초·	전라북도교육청	https://bit.ly/3Xs5h4C
	중·고·특수용: 상세본), 교육부 2016	인성건강과-건강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전라북도교육청	https://bit.ly/3GDw9b0
		인성건강과-부서자료실	
 감염병 예방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시행일 '23.1.1.) 교직원 대상	질병관리청 결핵ZERO	https://bit.ly/3QNOdnG
		결핵ZERO-지침-관리지침	
		전라북도교육청	https://bit.ly/3CPyHSr
	결핵예방교육 자료	인성건강과-부서자료실	
		질병관리청	www.kdca.go.kr
	교육자료, 통계자료	·알림·자료-홍보자료-교육지 ·감염병-감염병정보 또는 결 ·간행물·통계-청소년건강행대	핵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bit.ly/3ZCOEFj
	비만예방 교수학습 과정안	소아·청소년 비만예방 교육괴 교육청, 청소년비만예방연구호	
	학교 기반 비만예방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bit.ly/3Hd0mz5
건강한 체중 유지·관리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학교기반 비만 예방 프로그 청 국립보건연구원, 2021	L램 가이드라인, 질병관리
	18 4 1 2 2 2 2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bit.ly/3QOw1Kv
	아동 비만 관리사업 교육매체	아동비만예방관리사업 '건건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	강한 돌봄놀이터' 교육매)21
	비만예방 영상	전북교육청	https://bit.ly/3CSMiIm
	্ <u>।</u> এপান্ট প্র	인성건강과-업무마당-보건·	성교육

	자료 내용	7 <u>1</u> 11/1/2	트 주소		
	교육자료		ww.jbe.go.kr		
	五·4/4五	인성건강과-부서자료실-건	강교육		
흡연예방	교육자료, 통계자료	금연길라잡이 <u>w</u>	ww.nosmokeguide.go.kr		
		지식+-흡연현황·통계			
흡연예방, 감염병	교육자료, 홍보자료	1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ps://bogun.sen.go.kr		
급단에 18, 1급 급명	파작자료, 중 모자료	·자료실-교육자료-검색: 김 ·자료실-학교흡연예방사업	·염 또는 흡연 게뉴얼		
마약 및	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www.drugfree.or.kr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홍보자료	마약정보 및 자료-마약약들	 글오남용-예방자료		
약물 오·남용		전라북도교육청	https://bit.ly/3XsSONY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인성건강과-부서자료실			
1, 0 1	검진기관현황	국민건강보험	https://bit.ly/3IQgdVt		
학생건강검사	('22.12.31.기준) 출장검진기관 포함	국민과함께-공지사항-검진	기관현황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bit.ly/3H3Nxag		
	응급의료 관리체계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교육과학기술부 2011			
		전북교육청	https://bit.ly/3Wp1Db0		
	당뇨병 학생 관리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교육부, 보건복지 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2019			
응급환자 및	시미리라지지 ㅇ그리키바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https://bit.ly/3GM1wjF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방법 (에피펜 사용방법)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쇽) 대한천식알레르기학 회,2011			
관리		질병관리청	https://bit.ly/3ZBqsmH		
	희귀질환정보	질병관리청-건강정보-희귀질환정보			
	0 7 1 7 7	국립중앙의료원	https://bit.ly/3IXByfN		
	응급실 찾기	E-GEN 응급의료포털	https://bit.ly/2kxF9bx		
	학교 주변 병원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bit.ly/3H9WpuY		
		의료정보-병원·약국찾기			
	2022년 학교 보건실 현대화 관련 공간구성	전라북도교육청	https://bit.ly/3XsSONY		
	참고자료	인성건강과-부서자료실			
	의약품 관리	약학정보원	https://bit.ly/3ITXPLn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bit.ly/3ITxpJG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u>www.nhis.or.kr</u>		
감염성질환 및	교육자료, 웹툰	건강in-건강자료실- 건강	동영상, 질병예방과전염성		
청소년건강 전반		,	청소년건강		
		국립정신건강센터	www.mentalhealth.go.kr		
정신건강	교육자료, 자가검진, 통계	·자가검진-생애주기별자가검진 ·인식개선정보-동영상 ·정신건강통계			
	고 으키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www.smhrc.kr		
	교육자료	자료실			

[참고자료 3]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 (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O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참고자료 4]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

		학	교규모별 소요기	 준
구분	시설 및 기구명	보건교사	보건교	사 배치
		미배치	18학급미만	18학급이상
	사무용 책상·의자	권장	필수	필수
	건강기록부 및 서류보관장	필수	필수	필수
	약장·기기 보관함	필수	필수	필수
	소독(멸균)기	권장	필수	필수
	냉·난방시설		필수	필수
	통신시설		필수	필수
	컴퓨터·프린터기		필수	필수
 1. 일반시설	수도시설 및 세면대		필수	필수
· ·	세족기		권장	필수
및 기구	칠판/화이트보드		권장	필수
	교육기자재(TV/VTR)		권장	필수
	냉장고		필수	필수
	전자렌지		권장	필수
	가습기		필수	필수
	물 끓이는 기구		필수	필수
	손전등		권장	권장
	진공청소기		권장	필수
	침대·침구류	필수	필수	필수
2. 환자안정용	침구보관장	권장	권장	필수
기구	칸막이(가리개/파티션)	필수	필수	필수
	보온기구(전기요 등)	필수	필수	필수
	진료대 및 진료용 의자		권장	필수
	신장계	필수	필수	필수
	체중계(디지털)	필수	필수	필수
	형광시력표, 차안기	可入	可入	可入
	시력검사용 지시봉	필수	필수	필수
	시력표		권장	권장
	조명장치(스탠드)		권장	필수
	혈압계(성인용, 소아용)	권장(전자식)	필수	필수
3. 건강진단 및	청진기		필수	필수
상담용 기구	펜라이트		필수	필수
	상담용 탁자·의자		권장	필수
	상담용카세트		권장	권장
	혈당측정기	권장	필수	필수
	검안경, 검이경, 비경		권장	필수
	스톱워치		권장	권장
	비만측정기	권장	권장	필수
	체지방측정기	권장	권장	필수
	치과용 거울, 탐침, 핀셋		권장	권장

		학	교규모별 소요기	준
구분	시설 및 기구명	보건교사	보건교	사 배치
		미배치	18학급미만	18학급이상
	체온계(고막체온계)	필수	필수	필수
	핀셋·핀셋통	필수	필수	필수
	마이크로핀셋(가시제거용)	필수	필수	필수
	가위·농반·거즈통	필수	필수	필수
	소독접시, 드레싱카	권장	필수	필수
4 0 7 3 3 0	부목(대,중,소)		필수	필수
4. 응급처치용 기구	구급낭(휴대용 구급기구)	필수	필수	필수
	들것		권장	필수
	목발		권장	권장
	지혈감자		권장	필수
	휴대용산소기		권장	권장
	세안수수기		권장	권장
	냉온찜질기		필수	필수
	구강(치아)모형		권장	권장
	성교육용 도구		필수	필수
5. 보건교 육용	흡연예방/금연교육용 도구		필수	필수
교구	안전교육용 도구		권장	권장
	심폐 소생술 실습용 인형		권장	권장
	기타 보건교육용 교구		권장	권장
	안경초음파 세척기		권장	권장
6.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권장	권장

※ 보건교사 미배치교: 필수기구 13종, 권장기구 8종

※ 보건교사 배치교: 18학급미만 필수기구 31종, 권장기구 28종

18학급이상 필수기구 45종, 권장기구 14종

[참고자료 5]

보건실 현대화 환경 점검표

1. 보건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항	목	७ /	우수	미흡
규	모	1. 교실 1칸(66 m²)이상인가?		m²
		2. 보건실 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간은 모두 설치되었는가? <업무실, 처치실, 안정실, 상담(검사)실, 보건교육실 등>		
	·간 ·성	3. 주변에 보건교육자료가 게시 및 전시되어 있는가?		
		4. 적정한 인원수(약3~4인정도)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와 공간이 확보 되었는가?		
		5. 처치공간과 동선이 짧고 보건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업	6. 책상 및 사무기기 면적 및 배치는 적절한가?		
	무	7. 책상 앞의 칸막이는 학생을 파악하기 쉬운 높이로 맞추어져 있는가?		
	실	8. 책상 앞의 칸막이는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가급적 플라스틱 사용. 유리사용 시 강화유리 및 모서리 프레임 설치)		
		9. 충분한 조도(300 LUX이상)를 확보하였는가?		
공 간		10. 처치대가 부상자 이용 및 보건교사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었는가?		
구성	처 치	11. 드레싱카 등 처치에 필요한 기구들을 수납하거나 놓을 장소가 충분한가?		
세	실	12. 필요시 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이동식 가리개 등)		
부		13. 세면기, 세족기 등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출입구 쪽)		
내 용	안	14. 학급수, 성별을 고려하여 침대 수가 적정한가?		
	정	15. 개인보호 및 남·여 구분을 위한 가림시설이 설치되었는가?		
	실	16. 교사가 학생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안정실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상다	17. 내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이 되어 있는가?		
	담 · 검	18. 상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로 되어있는가?(상담을 위한 책상, 의자 등이 비치)		
	사 실	19. 키, 몸무게, 시력검사 등 건강측정기구가 대기 공간 주변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평	가	-1 1 2	평	가
항목		평 가 내 용		미흡
		20. 약장, 의료용 소모품 장은 처치실과 근접하고, 약장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수 납	21. 응급의료기구(들것, 휴대용산소, 앰부백)가 필요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찾기 쉬운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공 간	22. 침구 및 청소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공 간		23. 씽크대, 냉장고, 컵 소독기, 의료용 멸균소독기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었는가?		
구성	세	24. 세면대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위치, 높이가 적절한가?		
	면 시	25. 세족대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위치, 높이가 적절한가?		
세부	설	26. 온수공급을 위한 순간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내 ['] 용		27. 벽, 바닥, 천장, 수납가구는 친환경, 내마모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밝고 안정감이 있는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기	28. 각 공간의 적절한 위치에 콘센트가 설치되었는가?		
	타	29. 배관은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설치되었는가?		
		30.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2. 보건교육실 설치

평가	짓 가 내 욧		가
항목			미흡
규모	1. 한 학급(30명 정도)이 수업할 수 있는 규모인가?		
1 = -1	2. 보건교육에 필요한 가구를 비치하였는가? (교사용 책상 및 의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수납장 등)		
기구 및 설비	3. 보건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설비를 갖추었는가? (컴퓨터, 프로젝션 TV 등)		
	4. 보건교육자료를 게시 및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A) =)	5. 보건수업 중 보건실을 관찰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 되어있는가?		
위치	6. 보건실과 인접하여 수업 중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는가?		

[참고자료 6]

흡연·음주 실태조사 설문지(예시)

흡연실태조사 설문지 예시

학생 및 가족 흡연 실태조사(저학년)

이 설문은 우리 학교 학생 및 가족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얻은 결과는 청소년들을 위한 흡연예방 혹은 금연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답변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하니 솔직하고 진지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에 ∨표 해주세요. [학생] (학년 / 성별 □ 남 □ 여)	
1.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 없다. <i>(2번 문항으로)</i> □ 1회 □ 2-3회 □ 여러 번(4회 이상)	
l-l. 어떤 담배를 피워봤나요? □ 궐련(일반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 아이코스, 릴, 글로 등) □ 기타())
1-2. 왜 피우게 되었나요? □ 궁금해서 □ 친구나 선배가 피워보라고 해서 □ 멋있게 보이려고 □ 스트레스를 받아서 □ 광고를 보고 따라함 □ 가족이 피우는 모습을 보고	
2.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담배를 피울 생각이 있습니까? □ 절대 담배를 피울 생각이 없다. □ 아마도 피울 것이다. □ 분명히 피울 것이다.	
3. 또래의 다른 학생(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 아주 멋있다. □ 약간 멋있다. □ 관심 없다. □ 약간 보기 싫다. □ 매우 보기 싫다.	
[가족]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설문종료)	
l-l.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체크해주세요. □ 아버지 □ 어머니 □ 형제자매 □ 할아버지 □ 할머니 □ 기타(삼촌, 이모, 고모 등)	
1-2. 담배를 피우는 가족에게 금연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흡연실태조사 설문지 예시

학생 및 가족 흡연 실태조사(고학년)

이 설문은 우리 학교 학생 및 가족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얻은 결과는 청소년들을 위한 흡연예방 혹은 금연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답변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그로 인 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하니 솔직하고 진지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에 ∨표 해주세요. [학생] (학년 / 성별 □ 남 □ 여)
1.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 없다. <i>(2번 문항으로)</i> □ 1회 □ 2-3회 □ 여러 번(4회 이상)
1-1. 있다면 언제부터 피우게 되었나요? □ 초 □ 중 □ 고 ()학년 때
1-2. 그동안 경험한 담배 종류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궐련(일반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 아이코스, 릴, 글로 등) □ 기타()
1-3. 현재(최근 한달) 사용 중인 담배 종류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궐련(일반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 아이코스, 릴, 글로 등) □ 기타
1-4. 피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호기심 □ 친구나 선배의 권유 □ 멋있게 보이려고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광고를 보고 따라함 □ 가족이 피우는 모습을 보고
1-5. 담배를 주로 어디서 피우십니까? □ 학교 □ 공원 □ PC방(오락실) □ 노래방 □ 기타()
2.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담배를 피울 생각이 있습니까? □ 절대 담배를 피울 생각이 없다. □ 아마도 피우지 않을 것이다. □ 아마도 피울 것이다. □ 분명히 피울 것이다.
3. 또래의 다른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 아주 멋있다. □ 약간 멋있다. □ 관심 없다. □ 약간 보기 싫다. □ 매우 보기 싫다.
4. 또래의 학생들 또는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 학생 :
5.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다면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적어보세요.
[가족]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i>(2번 문항으로)</i>
1-1.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체크해주세요. □ 아버지 □ 어머니 □ 형제자매 □ 할머니 □ 할아버지 □ 기타(삼촌, 이모, 고모 등)
1-2. 담배를 피우는 가족에게 금연을 권유한 적이 있나요? 🗌 있다. 🗎 없다.
1-3. 가족의 금연을 위해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적어주세요.
2. 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은 얼마나 긍정적이십니까?□ 매우 긍정적이다 □ 긍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매우 부정적이다

※ (흡연지식)다음은 흡연에 관한 학생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내 생각과 같은 칸에 ✓ 표 하세요.

문항	항 목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면 어른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	v		
2	담배를 피우면 안정감을 준다.		✓	
3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진다.		✓	
4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		
5	담배를 피우면 어지럽고 기침이 난다.	V		
6	담배에는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다.	v		
7	담배 속에는 일산화탄소, 니코틴, 타르 등이 들어 있다.	V		
8	임신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유산 될 수 있고 체중이 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V		
9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	
10	담배를 조금씩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	
11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		
12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기 힘든 이유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V		
13	담배는 담배 잎을 말린 것으로만 만들어졌다.		✓	
14	담배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V		
15	흡연을 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 공부에 도움이 된다.		✓	
16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남자보다 위험하지 않다.		✓	
17	담배를 피우다 끊으면 금단증상이 일어나 다시 피우고 싶다.	V		
18	나의 흡연이 남의 건강을 해친다.	V		
19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아도 담배 연기는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V		
20	담배를 피우면 심장기능이 약해진다.	√		

 [※] 교사용 참고 내용 : 정답(V)에 응답했을 경우 1문항 당 1점, 총 20점 만점
 예) 1번 문항: 그렇다에 응답했을 때 1점, 아니다, 모르겠다에 응답했을 때는 0점 처리

※ (흡연태도) 다음은 흡연에 관한 학생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하세요.

문항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은 점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다.					
2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3	선생님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쁘다.					
4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5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의 흡연은 금지되어야 한다.					
6	담배를 피우면 돈이 많이 들어 나쁘다.					
7	친구가 담배를 피워보라고 권유하면 거절하겠다.					
8	청소년은 미성년자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					
9	담배를 피우면 어른스러워 보이거나 멋있어 보인다.					
10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					
11	어른들은 적당하게만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					
12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13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도 된다.					
14	외제 담배가 국산 담배보다 품질이 좋아서 몸에 덜 해로울 것이다.					
15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를 해도 된다.					
16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울 생각이 있다.					
17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피고 싶은 생각이 든다.					
18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필 수 있다.					
19	호기심에 한 두 번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20	담배를 피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피워보겠다.					

•흡연태도 9번부터 부정문항

•1-8번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9-20번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그렇지 않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

음주실태조사 설문지 예시

학생 음주 실태 조사(예시)

본 설문지는 학생 음주 실태 및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얻은 결과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답변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하니 솔직하고 진지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에 ∨표 혀	H주세요.		
[학생]		(학년 / 성]별 □ 남 □ 여)
1.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제산, 차례 또는 성찬식	(종교의식) 때 몇 모금 마/	셔 본 것은 제외)	
□ 있다. □ 없	다.		
2.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 마셔본 때는 언제입니까'	?	
□ 초등학교 입학전	□ 초등학교 1학년	□ 초등학교 2학년	□ 초등학교 3학년
□ 초등학교 4학년	□ 초등학교 5학년	□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3. 지난 한달(30일) 동안, 전	적어도 1잔 이상 술을 마신	l 날은 며칠입니까?	
□ 없음	□ 월 1~2일	□ 월 3~5일	□ 월 6~9일
□ 월 10~19일	□ 월 20~29일	□ 매일	

[참고자료 7]

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 안내(예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〇월 〇일(〇)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사항으로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받는 자 : ○○학교 2. 이용목적 :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
3. 개인정보항목 : 학년 반, 성별, 이름,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4. 보유· 이용기간 : 0000학년도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위 사항에 대한 동의거부권을 행사하실 경우 해당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학년 반	번호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보호자	응급상황 시 전화번호
					부	· 집 :
주소					모	· 핸드폰 1(관계):
· 큰 병을 앓기	–	배 치료중인 질병	#명 :	•		· 핸드폰 2(관계): · 학부모 부재 시 연락처
). 사무 이용 (가는 영급	E 50 ·		7		

2. 본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 ※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 동 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2) 위급 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 (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 응급처치동의서 ◈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시 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3. 감염병 관리

- ▶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경우 가정에서의 요양을 권하고 즉시 등교중지합니다.
- ▶ 법정 감염병인 경우 학교에는 담임선생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학생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의사소견** 서를 첨부하시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법정 감염병의 종류는 질병관리청(http://www.kdca.go.kr)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상태 조사 설문지 (초등학생용)

본 설문 조사는 학생들의 건강 생활 행동 양상을 파악하여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 자료가 되오니 정확하게 해당되는 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조사항목	조사내용	예	자세하게 기입	아니 오
	* 심장병,간질환,백혈병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다	\Rightarrow	진단명: 언제: 치료방법:	
예방접종/ 병 력	* 최근 1년간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	\Rightarrow	예방접종명: 언제: 장소:	
	* 최근 1년간 가족 중 당뇨, 고혈압 등 가족력이 있는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Rightarrow	진단명: 치료방법:	
시 계 하./	*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식생활/	*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			
비 만	* 매일 우유, 유제품, 채소, 과일 등을 먹는다			
이제되기기	* 외출 후, 식사 전 비누로 손을 씻는다			
위생관리	* 식사 후,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			
신체활동	* 주3회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다	\Rightarrow	운동의 종류: 시간:	
	* 잠을 8시간이상 충분히 잔다			
학교생활/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가정생활	* 가정(가족) 내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있다			
 텔레비전/	* TV 프로그램을 골라서 필요한 것만 본다			
인터넷이용	*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 2시간 이하로 한다			
[인터넷의공	* 음란물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A) =1 A) 21	* 도로 횡단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지켜 건넌다			
안전의식	*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학교폭력	*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언제: 어떻게:	
	*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칼 몽둥이 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휴여/은주/	* 주변에 담배를 많이 피워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라 드, ㅁ , , 양묵 Q 난 용	* 주변에 담배를 많이 피워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1570	* 반드시 내 약인 것을 확인하고 약을 먹는다			
성의식	* 내가 여자(남자)라서 행복하다			
	* 싫은 느낌인데도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사회성/	*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신건강	*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건강상담	* 건강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 받을 사람이 있다			
학교재량				

4. 건강상태 조사 설문지 (중·고등학생용)

본 설문 조사는 학생들의 건강 생활 행동 양상을 파악하여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조사항목	조사내용	예	자세하게 기입	아니오
예방접종/ 병 력	* 심장병,간질환,백혈병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다	\Rightarrow	진단명: 언제: 치료방법:	
	* 최근 1년간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	\Rightarrow	예방접종명: 언제: 장소:	
7 4	* 최근 1년간 가족중 당뇨,고혈압 등 가족력이 있는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Rightarrow	진단명: 치료방법:	
) 미국 /	*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한다			
식생활/	*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			
비 만	*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한다	\Rightarrow	어떻게:	
() 1] -] -]	* 외출후, 식사전 비누로 손을 씻는다			
위생관리	* 식사 후,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			
기의정도	* 주3회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다	\Rightarrow	운동의 종류: 시간:	
신체활동	* 잠을 6시간이상 충분히 잔다			
학교생활/	* 지난 1년간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가정생활	* 지난 1년간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인터넷/	*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가? (① 1시간 이내 ② 1~2시간 이내 ③ 2~3시간 이내) ④ 3	3시간 이상	
음란물	*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는가?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본다 ③ 일주일에) 2-3번	정도 ④ 한 달에 3-4번	정도
안전의식	*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입원한 적이 있다			
2277	*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학교폭력	* 학교에서 협박이나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언제: 어떻게:	
	*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칼, 몽둥이 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さみ10 Z1	*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운다			
흡연/음주/	*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 자주 마신다			
약물오남용	* 반드시 내 약인 것을 확인하고 약을 먹는다			
23 61 21	* 내가 여자(남자)라서 행복하다			
성의식	*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 알고 대처할 수 있다			
사회성/	*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신건강	*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건강상담	* 건강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 받을 사람이 있다			
학교재량				

[참고자료 8]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	·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	기관	(전화번호:)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 대연배상금 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 (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 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만형사상 책임을 진다.
-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고시에 의해 검진 비용 변경 시 변경된 금액을 적용함.
-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〇〇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9]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기록지

0 0 학교

학년반	학생명	성별	보호자명	주	소			선화 <u></u> 보호	담임 교사명
병	명					<	인체	>	
	건시간 소								
	상황 및 자 상태								
응급치	서치 내 용					신체 전면		신	∠ LS 체 후면
:후송시건 후송자 (송내용 ŀ, 후송병원 응급처치자 ·운전자)	***************************************					_	후송! 송차량	
	인 개요 으로 기재)								
1	비고 ^{된 날짜 등)}						기.	록자	인

※ 기록 : 안전사고 발생시 환자 상태, 사고 현황, 응급처치 내용 및 이송 상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

- ① 사건의 시간과 장소 ② 관련된 행동 ③ 관계자 등의 확인 ④ 신체부분의 상해 ⑤ 응급처치 상황
- ⑥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 ⑦ 의학적 진단 ⑧ 회복된 날

[참고자료 10]

건강요주의 학생 명단(예시)

0000학년도

학년/반 /번호	이름	성별	병명 및 증세	응급 시 연락처	학생 및 보호자 지원요청 사항 ¹⁾	학교 관리지원 사항 ²⁾	비고
			〈이하 작성 예시 자료임〉				
			소아 당뇨(제1형 당뇨, 선청성)				
			약한 천식(알러지성)				
			폐결핵(2014년부터)				
			오른손 화상으로 인한 활동장애				
			심장 종양(장애 등급)				
			심한 허약체질. 원시				
			다리운동 장애(무릎)				
			고관절(골반과 허벅지 사이) 이상				
			복부 수술 후(비장 내 물 제거)				
			선천성 종양 수술로 인한 오른 쪽 눈 실명. 얼굴 모양도 약간 이상				
			폐결핵(2009. 11월 이후)				
			신장이식수술(신장하나뿐)				
			척추질환				
			만성신장병(신부전)				
			경련성 발작 우려				

- 1) 학생 및 보호자 지원요청 사항: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에 지원 요청한 사항
- 투약행위 지원, 투약장소 제공, 혈당관리, 인슐린 보관, 응급약품(글루카곤) 보관, 기타 등
- 2) 학교 관리지원 사항: 학생 및 보호자의 지원요청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 ※ 건강요주의 학생 명단은 수업 및 학생 활동 시 참조하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2023학년도 학생건강중진교육 기본방향

2023. 2월 발행

발행처 : 🚺 전라북도교육청